



승 인 번 호
제 38001 호

통계법 제13조(비밀의 보호등)

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
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
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.

작성기관 : 한국 산업 안전공단

업 무 상 재 해 조 사 표

※ 유의사항

- ▣ 본 조사표는 귀 사업장에서 요양신청한 재해자의 사고발생원인을 조사하여 동종재해예방에 활용하고자 하오니
- ▣ 좌측의 해당 재해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주십시오.
- ▣ 기록한 조사표는 동봉한 회송봉투에 넣어 ○월 ○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라며
- ▣ 팩스로 보내실 경우 반드시 앞면의 조사표 번호를 뒷면에 기재하시고 확인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(작성자 및 연락처 상단기재 요망)

※ 회송주소

전 화

팩 스

조사표 번호 :

재 해 일 자 :

재 해 자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산재보험 성립번호
(사업개시번호)

작성날짜 : 년 월 일

작성자 이름 : 소속부서: TEL:

I. 사업장 정보

업종			조사표번호		
생산품			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		
건설업	구분	☐ 도급(원청) ☐ 수급(하청) ☐ 기타()	재해당시공정율(%)		
기재	공사종류			총공사금액(백만원)	백만원

II. 재해발생 정보

인적피해	부상____명 사망____명	재해발생장소/부서	/		
재해원인이 된 작업공정·내용					
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·내용					
개인보호장비	☐ 착용비대상 ☐ 착용대상 【 ☐ 없음 ☐ 있음(장비:)】				
안전·방호설비	☐ 설치비대상 ☐ 설치대상 【 ☐ 없음 ☐ 있음(장비:)】				
재해유발기계,물체(물질)		()			
가해물		재해발생형태		작업형태	☐ 단독 ☐ 복수____명
재해발생형태별 추가 정보	추락	높이()m 추락장소()	화재·폭발 점화원		
	감전	전압()V 접촉부위()			

III. 재해자 정보

직업/직위	/	평소수행업무			근로손실일	
고용형태	☐ 상용 ☐ 일용 ☐ 시간제 ☐ 무급가족종사자 ☐ 사업주 ☐ 자영업자 ☐ 기타()				동종업무 근속기간	____년 ____월
	근무형태	☐ 정상 ☐ 2교대 ☐ 3교대 ☐ 기타()				
재해발생 시점	☐ 작업 전 ☐ 정규작업 ☐ 연장근무 ☐ 식사·휴식 ☐ 출·퇴근 ☐ 휴일근무 ☐ 기타()				상해종류	
					상해부위	

IV. 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십시오.

사고와 직접 연관이 되었던 「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작업상황」과 사고 발생시점의 「작업자(또는 재해자)의 움직임, 행위」에 대하여 기재하고, 사고가 「어떤 형태<취급설비, 도구, 원재료와 작업자(또는 재해자)의 상관관계>」로 발생되었는지 단계별로 그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입	
재해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취급설비 및 환경적 요인은(불안전상태) ?	
재해를 유발한 작업자(재해자)의 행위 또는 작업자 세·동작은(불안전행동) ?	

【 업무상재해 조사표 작성요령 】

I. 사업장 정보

- 근로자수 : 정규, 임시, 가족근로자, 훈련생 등 급여를 받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 기재
- 재해당시 공정율 : 조사당일 현재 귀 사업장의 건설현장 공사진척도로 전체 공정율 기재 (단위 공정율이 아님)
- 공사종류 : 재해당시 진행중인 공사종류 【 예 : 아파트, 교량, 터널, 지하철·전철, 도로, 석유화학플랜트, 댐·제방 등 】

II. 재해발생 정보

- 재해발생장소/부서 : 사고가 최초로 발생한 지점으로 장소가 사무실인 경우는 부서명도 기재
※ 재해자의 작업중이던 장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- 재해원인이 된 작업공정·내용 : 사고발생에 근본적 원인이 된 **작업공정과 그 작업공정 중에 사고를 유발한 작업자의 수행내용** 또는 행위를 기술
※ 재해자 본인의 작업공정 또는 내용이 아닌 동료 작업자의 작업공정·내용 일 수도 있음
【 작업공정 예 : 용해공정, 용접공정, 성형공정, 절단공정, 운반공정, 반응공정, 기계·건축물의 설치·보수공정 등 】
【 작업내용 예 : 재료가공물의 투입·취출, 조립·연결·해체, 기계·차량등 운전·조작, 상·하역, 적재, 휴식, 단순이동중 등 】
-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·내용 : **사고발생 당시 재해자가 수행중인** 작업공정과 작업수행내용 기술
※ 재해원인이 된 작업공정·내용과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·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**한번만 기재**
- 개인보호장비 :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재해자가 작업수행시 개인보호장비 착용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는 「**착용대상**」에 표시,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착용한 경우라도 재해방지가 곤란한 경우는 「**착용비대상**」에 표시
- 착용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착용한 개인보호장비가 있는 경우에만 장비명 기재
- 안전·방호설비 :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고를 유발한 기계 또는 설비에 안전·방호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는 「**설치대상**」에 표시하나,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고 설치하여 사고방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통상적으로 동 작업 수행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「**설치비대상**」에 표시
- 설치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된 안전·방호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설비명 기재
- 재해유발 기계, 물체(물질) : 사고 발생을 일으킨 직접원인이 된 설비, 시설 등 즉, 기인물을 말함
※ 사고발생의 직접원인으로 재해자가 취급하던 설비가 아닌 주변설비 또는 동료 작업자의 취급 설비도 될 수 있음
【 예 : 프레스, 호이스트, 벨트컨베이어, 분쇄기, 로울러기, 수공구, 바닥, 지붕, 산화에틸렌, 신나, 사람, 개 등 】
- 가해물 :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기계, 물체 또는 물질
- 재해발생형태 : 재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기인물과의 관계된 발생현상
【 예 : 추락, 미끄러짐, 낙하, 협착, 붕괴, 화재·폭발, 감전, 질식, 고온·저온접촉, 유해·위험물 접촉 등 】
- 작업형태 : 2인1조의 작업인 경우에도, 재해자의 작업장소가 단독작업장소가 될 수 있음
【 예 : 2인1조로 승강기를 이용 운반작업시 1명은 1층에서 화물을 적재, 1명은 5층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】

III. 재해자 정보

- 직업/직위 : 평소 수행하는 정규 직업과 직책 【 예 : 금형가공자, 버스운전, 회계업무, .../ 과장, 반장, 조장,... 】
- 고용형태 : 근로자는 상용, 일용, 시간제, 가족 등으로 나뉘며, 각 고용형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.
① 상 용 :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정규직·계약직·임시직 포함
② 일 용 : 1개월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계약·임시·계절근로자 포함
③ 시간제 : 일당이 아닌 시간제로 급여를 받는 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: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 받지 않는 자
⑤ 사업주 : 혼자 혹은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자 ⑥ 자영업자 : 혼자 혹은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
- 근무형태 : ① 정상 : 오전 8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18시 전후에 퇴근,
② 2교대, 3교대 : 근무는 동일작업에 대하여 2개조, 3개조에 의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형태
- 근로손실일 : 재해당일을 제외하고 작업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한 전날까지 산정·기재하고, 만약, 조사당일까지 복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귀 예정일까지 추산하여 기입
- 동종업무근속기간 : 과거 타 회사부터 현직 경력까지 합하여 기재하되, 동일 또는 유사업무의 근무경력에 한함.
- 상해종류 :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신체적 특성·상해형태
【 예 : 뼈가 부러짐, 찰림, 찢림, 타박상, 찰과상, 베임, 화상, 수포, 호흡기·소화기 손상 】
- 상해부위 : 부상 또는 질병이 나타난 신체부위로 진단 받은 신체부위
【 예 : 머리, 눈, 얼굴, 몸통, 허리, 손가락, 전신 등 : 만약 중대한 상해부위가 2부위 이상이면 모두 기록 】